

4. 재직 인정 기업

- ①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
- 재단이 정한 “재직 인정 제외 기업”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
 - * “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”(중소벤처기업부) 참고

- ②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

- ③ 대기업 :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
-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

- ④ 비영리기관 :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·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(80) 또는 비영리법인(82)에 해당하는 기업
-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“재직 인정 제외 기업”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불인정

<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재직인정 기업(비영리기관) 구분 코드 >

구분	사업자등록번호 개인·법인 구분코드
비사업자	000-80-0000
비영리 법인	000-82-0000

□ 재직 인정 기업 판단 기준

- 재직 인정 기업 유형은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기업정보로 판단
 - 장학생 선발 학기의 심사개시일 이후 변경사항은 고려하지 않음
 - 기업 유형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단한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함
 - 재직 인정 기업 여부 및 유형은 기업신용조사·평가 전문기관(NICE D&B, NICE 신용평가 등)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
- 고용정보 연계로 재직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, 요건 재심사 진행
 - 장학생이 제출한 재직 증빙 서류로 재심사하여 재직 인정 기업 판단

<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재직 인정 제외 기업 >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국공립학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www.alio.go.kr)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재직 인정 제외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
 - 지방직영기업(제5조), 지방자치단체조합(제44조), 지방공사(제49조), 지방공단(제76조), 지방공기업평가원(제78조의 4)
 -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(www.cleaneye.go.kr)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기관
 -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(www.cleaneye.go.kr)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·출연기관
- 부(父) 또는 모(母)가 대표로 있는 기업
 - ※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(환수) 조치
-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
-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
 - 단,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
- 재직인정 제외 업종 (☞붙임 3. 지원유형별 의무재직 제외 업종 참고)
 - 소비향락업 : 「청소년보호법」제2조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, 「풍속영업규제법」제2조, 「사행행위규제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 - * 예시 :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물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
 -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(I),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(R)
 -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·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
 - ※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(환수) 조치